

## IFRS 17도입과 관련한 세법관점의 제도개선방안\*

-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

윤재원\*\* · 박성중\*\*\* · 남혜정\*\*\*\*

### 〈요 약〉

본 연구는 최근 도입이 확정된 보험계약 2단계인 IFRS 17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세법 관점에서의 제도 정립 및 제도 안착을 위한 정책적인 방향을 해외 특히 유럽의 정책방향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마련하고자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세법의 개정방향의 원칙을 정하기 위하여 각국의 사례를 검토하였고 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국제회계기준이 시행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다수의 EU국가들은 자국의 기준들을 독자적으로 유지하고 있어서 IFRS 17 도입에 따른 세무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향후 Solvency II가 정착이 되면 자국기준 적용 가능성이 줄어들어 세무상 영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럽의 현행 대응 방향을 고려하여 4가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현행 법인세법 유지 및 IFRS 17 재무제표 기반으로 세무조정하는 방안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현행 법인세법 유지 및 IFRS 4 기반의 별도 세무목적 재무제표 작성하는 방안 세 번째는 IFRS 17과 일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인세법을 개정하는 방안 마지막으로 현행 법인세법 유지한 후 IFRS 17과 일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방안이다. IFRS 17의 경우 IFRS 4의 도입시 보다 보험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점을 고려할 때, 과세당국이 중심이 되어 유관기관과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조할 수 있는 공식적인 협의체(TF)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정책당국과 업계는 이러한 협의체(TF)를 시급히 조직하고 운용하여 국내 보험산업의 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조세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고 성공적인 로드맵을 구축하여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IFRS 17, 보험회계, 보험세무, 보험세무 정책방향

\* 이 논문은 2018학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진흥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으며 생명보험협회의 연구용역 과제인 IFRS 17 도입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를 재구성 및 확장하여 학술논문으로 발전시킨 것임

\*\* 홍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jwyoona@hongik.ac.kr, 주저자

\*\*\* 안양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부교수, sjpark@anyang.ac.kr, 교신저자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서울캠퍼스 교수, namhj@dongguk.edu, 공동저자

논문접수일 2020년 7월 15일      게재확정일 2020년 8월 17일

## I. 서 론

금융산업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산업이다. 특히 금융산업 중 보험업은 그 성격상 다양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보험소비자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형성된 산업인 만큼 산업의 안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분야이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및 재무분석가들이 보험자의 성과를 이해하고 분석하기 어려운 측면 및 보험이 보장하고 있는 여러 위험이 보험계약부채의 측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았으며 보험계약 내 유의적인 투자요소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등 그 거래의 특수성 및 복잡성을 이유로 보험계약에 대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이 부재하였기 때문에 보험과 관련하여 다양한 회계처리를 사용하여 왔었다.

이에 보험업 회계와 관련하여 IFRS 4를 도입하고 국제적으로 비교가능성과 목적적합성을 동시에 추구 할 수 있는 통일된 회계기준을 제정하여 보험자 재무보고의 비교가능성과 재무보고의 질적 향상을 모색하여왔지만 국가별 다양한 이해상충의 문제로 인하여 회계의 기본 원칙에 입각한 완전한 형태의 보험회계기준을 한번에 제정하지 못하고 단계별 프로젝트로 장기 추진하여 왔으며 2017년 5월에 최종적으로 IFRS 17 보험계약을 공표하였다.

IFRS 4 도입초기에는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었다. 김수성(2010)의 연구에서는 IFRS 4 도입시점으로 인하여 비상위험준비금이 세무상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IFRS 4가 국내 보험회계제도의 상당 부분을 수용하기는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큰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며 대표적으로 손해보험사의 비상위험준비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예상보다 영향이 클 것으로 분석되어 종전 세법의 내용을 개정하여 손금인정이 가능하도록 현행의 결산조정에 의한 비상위험준비금의 방법을 신고조정으로 변경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은경과 김문철(2016)은 IFRS 4 2단계 적용으로 인하여관련 제도들의 변경이 필요함을 지적하였고 특히 국내의 경우 오랜기간동안 보험업 관련된 회계, 감독규정, 세법이 일원화되어있었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관련제도의 변화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근에는 IFRS 17과 관련하여 심태섭과 장연호(2017)가 IFRS 17은 지금 시행되고 있는 IFRS 4와 다방면에서 다르기에, 과세당국의 보험회사에 대한 과세규정인 세무회계원칙(tax accounting principle, TAP)의 경우도 다른 규정과 마찬가지로 IFRS 17을 반영하여 개정할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GAAP인 IFRS 17은 물론 감독규정인 감독회계원칙(statutory accounting principle, SAP)이나 지급여력제도(Insurance Capital Standard, ICS)의 규정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IFRS 17의 경우 IFRS 4의 도입 시 보다 보험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점을 고려할 때, 과세당국이 중심이 되어 유관기관과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조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도입이 확정된 보험계약 2단계인 IFRS 17을 성공

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세법관점에서의 제도 정립 및 정책적인 방향을 해외 특히 유럽의 정책 방향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마련하고자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제 I 장 서론에 이어 제 II 장에서는 IFRS 17도입에 따른 주요 변화 및 영향을 기술하고, 제 III 장에서는 IFRS 17도입에 따른 세법상 이슈를 도출하고 논의한다. 제 IV 장에서는 해외 사례를 EU 국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 V 장에서는 IFRS 17 도입 관련 세법상 제도 개선 대안을 논의하여 도출하고 제 VI 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한다.

## II. IFRS 17도입에 따른 주요 변화 및 영향

### 1. 보험부채평가방법의 변경

IFRS 17도입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항목 중 가장 영향이 큰 항목이 현행 보험부채의 평가 방법이 원가법에서 시가법으로 변경된다는 것이다. 이전의 IFRS 4에서는 기존의 회계관행을 대폭 인정하고 보완책으로 보험적정성평가(Liability Adequacy Test, LAT)를 시행하도록 하였으나 IFRS 17에서는 IFRS 4와 달리 보험부채를 다른 자산이나 부채와 마찬가지로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IFRS 4에서는 기본적으로 보험부채를 원가기준으로 평가하였는데 이를 상세히 설명하면 최초에 보험을 계약이 발생한 시점에서 예측한 현금흐름을 기초로 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보험계약 당시의 기초율(예정 위험률, 예정이율 등)을 보험기간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보험부채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또한 이와 같은 원가기준에 의한 보험부채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보고기간말 부채적정성평가(Liability Adequacy Test, LAT)를 통하여 적절한 부채금액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요약하면 보험자는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계약의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추정치 를 이용하여 인식한 보험부채가 적정한지 여부를 평가하도록 한 방식이 이전 회계기준에 의한 보험부채의 평가방법이었다.

반면 IFRS 17에서는 보험부채를 금융자산의 평가방법과 마찬가지로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즉, 매 결산시점 당시의 현행 추정률(실제 위험률, 시장이자율 등)을 재산출하여 이를 이용하여 보험 부채의 공정가치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자산과 부채의 평가기준을 통일하고, 이로 인하여 회사의 경제적 실질을 보다 잘 반영하도록 하였다고 볼 수 있다.

## 2. 매출 및 신계약비 인식방법 변경

〈그림 1〉 매출인식방법의 변경

|    |      | 현행                                                                                                                                                                                                                                                                                                                                | IFRS17            |
|----|------|-----------------------------------------------------------------------------------------------------------------------------------------------------------------------------------------------------------------------------------------------------------------------------------------------------------------------------------|-------------------|
| 수익 | 인식시기 | 보험료 수취일                                                                                                                                                                                                                                                                                                                           | 사고 발생일 및 비용 발생일   |
|    | 인식대상 | 수취 현금 전체                                                                                                                                                                                                                                                                                                                          | 계약시 예측된 보험금 및 사업비 |
|    |      |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span style="color: red; font-weight: bold;">↓</span> <span style="color: red; font-weight: bold;">매출이 원가를 결정</span> <span style="color: red; font-weight: bold;">↑</span> <span style="color: red; font-weight: bold;">원가가 매출을 결정</span> </div> |                   |
| 비용 | 인식시기 | 사고 발생일 및 비용 집행일                                                                                                                                                                                                                                                                                                                   | 사고 발생일 및 비용 발생일   |
|    | 인식대상 | 실제 지급한 보험금 및 사업비                                                                                                                                                                                                                                                                                                                  | 실제 발생한 보험금 및 사업비  |

현행 IFRS 4는 보험료 수취 시 해당년도의 수익으로 인식하고 보험금 지급시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IFRS 17은 보험료 수취 시 수익의 인식 없이 보험부채로 계상한 후, 실제 보험사고 또는 비용 발생 등 서비스의 제공 시점에 서비스 대응 금액(지급보험금, 사업비 등)을 수익으로 인식하여 보험 전 기간에 걸쳐 보험이익으로 배분하는 구조이다. 현행 IFRS4는 신계약비를 지출하는 경우 이연자산으로 처리하고 보험료 납입기간(7년 한도) 동안 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IFRS 17은 전체 사업비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한 후, 직접비는 최초 보험부채 측정에 포함하여 실제 지출 시에는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계약기간에 걸쳐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로 인하여 종전과 같은 신계약비 이연제도는 불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를 포함한 핵심적 사항의 비교는 <표 1>과 같다. 이러한 변경은 보험과 관련된 시스템 특히 회계와 계리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를 필요로 한다.

〈표 1〉 현행과 IFRS 17에 따른 포괄손익계산서 표시형태 비교

| 구분     | 현행(IFRS 4)                             | IFRS 17                                |
|--------|----------------------------------------|----------------------------------------|
| 보험계약수익 | 보험료수익(현금기준)                            | 서비스마진의 상각<br>위험조정의 상각<br>예상보험금 및 사업비 등 |
| 보험계약비용 | 보험료비용(현금기준)<br>사업비(이연효과반영)<br>책임준비금전입액 | 실제보험금 및 관련비용<br>(사업비 등)                |
| 투자손익   | 자산운용손익                                 | 자산운영수익<br>보험부채이자비용                     |
| 기타포괄손익 |                                        | 할인율변동 효과(선택적)                          |

(출처) 오창수(2016), 조석희(2017) 참고하여 저자수정

### 3. 회계기준과 감독회계기준의 일원화

한국의 금융감독당국은 보험회계정책의 큰 방향을 일원화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해오고 있었다. 다만 IFRS 4하에서는 기존의 회계처리의 관습을 일정 부분 인정하여왔던 이유로 감독회계기준(SAP)을 전반적으로 회계 관행으로 받아들여 재무제표를 작성했던 보험업계에서는 실질적으로 IFRS 4도입 제도의 변화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IFRS 17의 경우에는 부채를 원가에서 시가평가로 전환 하는 등 기존의 회계관행과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하여 감독당국의 입장 변화가 커다란 이슈로 대두되었다. 현재 감독당국은 21년 IFRS 17 시행 이후에도 일반회계와 감독회계간 실질적 일원화를 목표로 IFRS 17 시행 대비 감독회계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 Ⅲ. IFRS 17도입에 따른 세법상 이슈

### 1. 부채의 시가평가

#### 가. 현행세무조정방법

현행의 보험부채 평가 방식은 순보험료 방식으로 보험료 수령액 중 사업비를 제외한 순보험료를 기준으로 보험부채(책임준비금)를 평가한다. 현행 세법에서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모든 보험계약이 해약된 경우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급액과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최소적립액 중 큰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sup>1)</sup> 이에 책임준비금 중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및 최저보증준비금 이외에 대해서는 세무조정이 없다.

1)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1. 금융감독원장(「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사업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말한다)이 인가한 보험약관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모든 보험계약이 해약된 경우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급액(해약공제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환급액”이라 한다). 다만,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환급액과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최소적립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나. IFRS 17 도입 후 세무조정

IFRS 17에서는 부채를 평가하는 경우 보험계리적 관점에서 많은 가정을 반영함과 동시에 미래에 지급할 보험금을 예측하여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시가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현행 세법은 원가법 적용을 전제로 하여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가법으로의 변경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원가법으로 계산한 보험부채와 시가법으로 계상한 보험부채와의 차이에 대하여 세무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2. 보험료 수익

### 가. 현행세무조정의 방법

현행 보험료 수익은 보험료의 회수기일이 도래한 때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IFRS 4에서 기존의 회계관행을 인정하고 있어 과거부터 보험업 감독규정에 의한 수익의 인식 기준을 따른 회계관행에 따른 것이다.<sup>2)</sup> 현행 세법의 보험료 수익에 대한 귀속시기가 회계와 일치하고 있어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다.<sup>3)</sup>

## 나. IFRS 17 도입 후 세무조정

IFRS 17에서는 보험료 수익을 전 보험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인식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현행 세법과 수익비용의 귀속시기의 차이가 발생하여 해당 금액차이에 대한 세무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 2) 보험업 감독규정 제6-2조의2 (보험료의 수익인식 기준) ① 보험료수익은 보험료의 회수기일이 도래한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보험료납입의 유예로 인하여 보험기간 개시일 현재 제1회보험료(전기납에 한한다) 또는 보험료전액(일시납인 경우를 말한다)이 회수되지 않은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제1회보험료 또는 보험료전액은 보험기간 개시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 3)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이자소득등의 귀속사업연도) ③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보험료·부금·보증료 또는 수수료(이하 이 항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보험료등이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보험료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부채로 계상한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을 포함한다)을 제외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상당액 등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의 환입액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 3. 사업비—손비의 귀속시기

#### 가. 현행세무조정의 방법

사업비는 유지비와 신계약비로 구분이 가능한데 이 중 유지비(인건비, 임차료, 감가상각비, 여비교통비와 같이 보험상품의 판매 유지를 위한 지원비용)의 경우 현행 IFRS 4하에서는 이의 회계처리 방법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유로 발생 시에 즉시 비용처리 하도록 하고 있는 일반적 회계원칙을 따르고 있다. 또한 현행 세법에서도 회계상 유지비의 손금산입 시기를 기업회계기준과 동일하게 보고 있어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는다. 사업비 중 신계약비(비례수당, 판매촉진비, 점포운영비, 진단비 인쇄비, 광고선전비, 교육훈련비 등이 포함된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된 비용)의 경우에도 현행 IFRS 4하에서 신계약비 지출액을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후에 7년 동안 균등하여 상각하도록 하고 있고<sup>4)</sup> 현행 세법에서는 회계상 신계약비의 손금산입 시기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어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다.<sup>5)</sup>

#### 나. IFRS 17 도입 후 세무조정

IFRS 17에서는 사업비를 해당하는 사업비에 대하여 보험계약 내의 경계에 있는 현금흐름과 보험계약 외의 경계에 있는 현금흐름으로 구분하여 발생 시에 비용으로 인식도록 하고 있다. 이

- 4) 제6-3조(신계약비의 이연 및 상각) ① 신계약비는 보험계약별로 구분하여 실제 신계약비를 이연하되, 별표 14에서 정한 표준계약공제액(이하 “표준계약공제액”이라 한다)의 50%(실손의료보험 및 저축성보험은 100%)와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이연금액이 표준계약공제액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신계약비는 당해 보험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또는 신계약비 부가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한다. 다만, 보험회사별 미상각신계약비가 당해 회계연도말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과 해약환급금식 보험료적립금(당해 회계연도말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에서 해약공제액을 차감한 금액과 영(零) 중 큰 금액)과의 차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연도에 상각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계약비의 상각은 보험료 납입기간 또는 신계약비 부가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각기간을 7년으로 하며 해약일(해약이전에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에는 실효일로 한다)에 미상각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약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전액 상각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단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계약비는 발생시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 5)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3 【신계약비의 손금 산입시기】 ①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장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계약비(모집수당, 점포운영비등)는 그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료 납입기간(그 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년)에 걸쳐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보험회사별 미상각신계약비가 당해 회계연도말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과 해약환급금식 보험료적립금과의 차액보다 커서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연도에 상각하는 경우 동 상각비는 손금산입한다. <개정 2010.09.01>
  - ② 예정신계약비를 초과하는 신계약비와 신계약비를 조기에 회수할 목적으로 부가보험료의 비율이 보험기간의 초기에 높게 되어 있는 경우의 신계약비를 당해 회계연도에 비용처리하는 경우 동 신계약비는 손금산입한다.

에 현행 세법과 수익비용의 귀속시기의 차이가 발생하여 해당 금액차이에 대한 세무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4. 전환조정의 주요이슈

전환시점에도 세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 새로운 회계기준의 최초 적용시점에 IFRS 17의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커서 책임준비금 부족액이 발생하여 기초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킬 때 이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슈, 할인을 변동에 의한 보험부채 관련 손익의 손금 및 익금 인정 여부, 손익의 귀속시기 차이에 의한 이중과세 또는 이중공제 배제 이슈, 보험수익의 현금기준 과세가 발생기준의 이연과세로 전환되면서, 세무상 과세된 수익이 향후 당기순이익에 반영되는 경우 익금에서 제외하는 기준 마련의 이슈, IFRS 17에서 허용하는 회사별 재량적 회계처리 방식의 수용 여부의 이슈 등이 다른 업종에 적용되는 세법의 형평성 및 세법 적용의 원칙에 근거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 가. 기타 이슈 (교육세)

교육세를 산출하는 방법을 교육세법에서는 보험업자가 수입한 보험료 중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다.<sup>6)</sup> IFRS 17이 도입되면 보험료수익은 종전과 다르게 보험사의 투자수익을 포함한 모든 수익을 포함한 개념이 아니다. 그러므로 보험료수익에 보험사가 획득하는 수익의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는 입법취지가 무색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지할 경우 교육세를 부과받고 있는 다른 금융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 경우 이전의 보험료수익에 맞는 개념으로 세무조정을 통해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IFRS 17에서의 보험료수익은 이전과 산정의 원칙자체가 판이한 것이어서 세무조정을 통해 조정이 어려워 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세무목적의 재무제표 작성을 추가로 고려해야 할 이슈가 있다.

6)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IV. 해외사례분석 - EU국가를 중심으로

### 1. IFRS 도입에 따른 EU 국가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 정립 방향

#### 가. EU 국가의 IFRS 도입과 세무상 개별재무제표 작성기준의 선택

국제회계기준(IFRS)은 세계 130개국이 채택하거나 인정하고 있는 기준으로, 유럽연합(EU)의 경우 IFRS를 적용하는 범위를 상장/비상장, 연결/개별(별도, 이하 개별재무제표로 표기함) 여부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다. EU는 2005년부터 EU 자본시장에서의 재무보고목적으로 작성되는 상장법인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해서는 IFRS 적용을 강제(EU Regulation 606/2002)하고 있으나, 각국의 영역 내에서 배당과 과세 등에 기초가 될 상장법인의 개별재무제표 작성기준에 대하여는 각국의 상황에 따라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Article 5 of EU Regulation)하고 있다.

- ① 상장법인 개별재무제표 작성 시 IFRS를 강제적용, 또는
- ② 상장법인 개별재무제표 작성 시 자국 회계기준(Local GAAP) 강제적용, 또는
- ③ 상장법인 개별재무제표 작성 시 IFRS와 자국 회계기준(Local GAAP)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EU 국가 대부분에서 기업회계이익은 세법에 따른 과세소득 산정의 출발점이 되므로, IFRS 기반 재무회계시스템의 도입은 각국의 과세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자국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련성(Book-Tax Conformity, BTC)이 높은 독일계 국가(German-speaking countries)와 이탈리아 등에서는 과세소득의 산정기초로 IFRS 기준을 채택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확산되었다. 자국의 GAAP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IFRS를 개별재무제표 작성기준으로 채택할 경우, 회계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과세소득에 큰 변화가 발생할 뿐 아니라 과세소득 산정에 대한 자국의 통제력도 크게 약화되고 예측가능성도 낮아지기 때문이다. 독일은 유럽의 대표적 대륙법 국가로 전통적으로 중소기업의 가족기업이 은행차입을 통해 경영을 영위하는 경제구조를 가져, 투자자 보호보다는 자본충실과 채권자 보호 중심의 기업회계기준(creditor protection oriented domestic GAAP)이 발전하였다. 채권자 보호 중심의 기업회계기준은 과세소득의 산정 목적에도 적합하여, 독일은 과세소득을 German-GAAP에 의해 산정하고 기업회계에 적용한 인식과 측정기준을 세무회계에도 적용하는 원칙을 확립하였다.

또한, 2009년 회계현대화법 발효 전까지 세무상 선택한 회계처리방식은 개별재무제표에도 적용하여야 하는 소위 결산조정방식(inverse authoritative principle)이 적용<sup>7)</sup>되어, 회계기준에 따라

7) 결산조정 원칙(inverse authoritative principle)은 BilMoG-Act in 2010에 의해 폐지됨

과세소득이 산정(기업회계→세무회계)될 뿐 아니라 과세소득 산정방식이 회계적 선택에 중요한 영향(세무회계→기업회계)을 미쳐 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이 상호 결부된 밀접한 관계(기업회계↔세무회계)를 맺었다. 독일의 회계기준은 신중성의 원칙(prudence principle)에 따라 미실현이익을 인식하지 않고 역사적 원가에 기초한 측정기준을 채택하였다. 한편 전통적으로 자본시장이 발전하여 다수의 소액 투자자 보호 중심의 기업회계기준이 정착된 영국의 경우, 세무회계가 기업회계의 기준을 대부분 수용하는 의존적 관계를 맺기는 하나 결산조정까지 필요로 하지는 않아, IFRS에 의한 개별재무제표를 세무상 기초로 수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투자자 보호를 중심에 둔 자국 GAAP과 IFRS의 정합성이 비교적 높아, 자국 GAAP에서 IFRS로 변경된 기준에 의해 산출한 회계이익을 과세소득의 산정의 출발점으로 삼는다고 하더라도 세무상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다. 결산조정에 의해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가 상호 결부되지 않아 세법에 따른 신고조정을 통해 과세소득 산정의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다.

## 2. 보험업에서의 회계기준, 감독기준, 세법과의 관계

EU 보험회사들의 GAAP, SAP, 그리고 TAX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험회사의 과세소득 산정은 다음 세 가지에 기초할 수 있으며, 자국의 감독기준과 회계기준이 국제적 기준인 Solvency II와 IFRS와 정합하는 정도에 따라 과세소득 산정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다.

- ① 감독기준 재무제표에 기초(SAP Basis)
- ② 세법상 별도 기준 재무제표에 기초(Tax itself Basis)
- ③ 회계기준 재무제표에 기초(GAAP Basis)

세법에서 계리적 요소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 보험업의 과세소득을 독자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일반적으로 SAP 또는 GAAP에 기초하여 과세소득을 조정하는 방식이 채택되었다. EU의 경우 상장사에 대해서는 감독기준과 회계기준이 Solvency II와 IFRS로 통일되어 적용되며, 자국의 감독/재무보고용 개별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은 각국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바, EU 상장-보험사가 선택할 수 있는 세무목적 재무제표의 대안은 <표 2>와 같이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EU 차원의 독립적인 기관에서 제·개정되는 감독기준(Solvency II) 또는 회계기준(IFRS)을 자국의 세무목적 재무제표 작성기준으로 채택할 경우, 과세소득은 국제적 기준의 제·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 자국의 통제력이 약화된다. 반면에, 개별재무제표 작성기준으로 Local GAAP을 채택하고 이를 세무목적 재무제표로 사용하는 국가 또는 보험업의 세무목적 재무제표로 Local SAP을 채택한 국가에서는, 국제적으로 결정되는 기준의 제·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만, 국제기준의 개정 따라 Local GAAP 또는 SAP이 개정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표 2〉 EU 상장 보험사의 세무목적 재무제표 선택 대안

| 제·개정<br>권한       | 세무목적 재무제표 선택 대안     |                      | 과세소득 산정에<br>미치는 영향                 |
|------------------|---------------------|----------------------|------------------------------------|
|                  | 감독기준<br>(SAP Basis) | 회계기준<br>(GAAP Basis) |                                    |
| EU 수준<br>독립기관    | Solvency II         | IFRS                 | 국제적 기준의 직접적인 영향<br>→<br>자국의 통제력 낮음 |
| 개별 국가 수준<br>제정기관 | Local SAP           | Local GAAP           | 국제적 기준의 간접적인 영향<br>→<br>자국의 통제력 유지 |

Local GAAP을 세무목적 재무제표의 기준으로 채택한 국가에서는 국제기준이 개정되더라도 자국 내 이익배분/공시/세무목적에 사용할 목적으로 자국의 회계기준을 잠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정합성을 추구하더라도 국제기준을 자국 GAAP에 수용하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때 과세당국은 타 행정기관 또는 감독당국 등과 협조하여 과세소득 산정의 기초를 유지할 수 있다. Local SAP을 채택한 경우도, EU 감독기준과의 정합도와 수용 시기에 따라, 과세소득 산정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대부분의 EU 국가는 Local SAP과 GAAP을 Solvency II와 IFRS와 완전히 일원화하지 않고 일정 부분 독립성을 유지하는 이원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자국 내 이익배분/공시/감독/세무목적에 있어 일정한 통제력을 유지한다.

그러나 국제기준과 자국기준을 완전히 이원화할 경우, 국제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기업에 두 개의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는 부담을 주고, 감독당국도 두 가지 기준에 의해 평가 지표가 산정되어 위기상황이 발생할 때 일관되게 신속한 대처를 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EU 국가는 자국기준과 국제기준의 정합성을 높이는 개정노력을 추진하고 있어, 자국 기준에 의해 세무목적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시차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국제기준에 의해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U 국가들의 IFRS 적용범위와 세무목적 재무제표에 대한 현황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대부분의 EU 국가에서 여전히 Local GAAP 또는 SAP 재무제표를 세무신고 목적용 재무제표로 계속 사용하고 있어, Solvency II와 IFRS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의 EU 주요 국가에서는 Local GAAP을 개별재무제표 작성기준으로 채택하고, 이를 세무목적으로도 사용하고 있다. 폴란드, 핀란드, 스페인, 벨기에 등에서는 감독기준(SAP)을 세무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세무신고 목적용 재무제표에 손해보험사는 기업회계기준을 사용하고 생명보험사는 감독기준(SAP)을 사용했으나, 2013년 Solvency II 도입예정에 맞춰 생명보험사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세무용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개정하였다. 영국은 개별재무제표 작성기준으로 Local GAAP과 IFRS를 선택할 수 있으나 정합성이 높

고, 보험사의 경우 IFRS를 사실상 의무적용하고 있어 IFRS 기준으로 통일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일랜드는 상장법인만 IFRS를 세무목적 재무제표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표 3〉 EU 국가들의 Local GAAP 및 TAX와의 관계

| 구분    | IFRS 적용범위    |              |              | 세무목적<br>재무제표             |
|-------|--------------|--------------|--------------|--------------------------|
|       | 개별기준         |              | 연결기준         |                          |
|       | 상장           | 비상장          |              |                          |
| 프랑스   | 적용안함         | 적용안함         | 적용(선택)       | Local GAAP               |
| 독일    | 적용(선택, 일부제한) | 적용(선택, 일부제한) | 적용(선택, 일부제한) | Local GAAP               |
| 이탈리아  | 적용(의무)       | 적용(의무, 일부제한) | 적용(의무, 일부제한) | Local GAAP               |
| 네덜란드  | 적용(선택)       | 적용(선택)       | 적용(선택)       | Local GAAP               |
| 룩셈부르크 | 적용(선택)       | 적용(선택)       | 적용(선택)       | Local GAAP               |
| 오스트리아 | 적용안함         | 적용안함         | 적용(선택)       | Local GAAP               |
| 폴란드   | 적용(선택)       | 제한적 적용       | 제한적 적용       | SAP                      |
| 핀란드   | 적용(선택)       | 적용(선택)       | 적용(선택)       | SAP                      |
| 스페인   | 적용안함         | 적용안함         | 적용(선택)       | SAP                      |
| 벨기에   | 적용(의무)       | 적용(선택)       | 적용(선택, 일부강제) | SAP                      |
| 포르투갈  | 제한적 적용       | 제한적 적용       | 적용(선택)       | SAP                      |
| 영국    | 적용(선택)       | 적용(선택, 일부제한) | 적용(선택, 일부제한) | 실질적 IFRS<br>(또는 UK GAAP) |
| 아일랜드  | 적용(선택)       | 적용(선택)       | 적용(선택)       | IFRS(상장사)                |

(출처) 심태섭(2010) 참고하여 저자수정

### 3. IFRS 17도입에 따른 국가별 영향 예측

#### 가. EU 국가—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Solvency II 도입 후 EU 동향에 대한 IMF의 보고서를 참조할 때, 국제적 기준 도입 후에도 EU 국가들의 회계, 세법 및 증권법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은 IFRS 17의 도입까지 염두에 두고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의 세무상 기초를 IFRS로 실질적으로 통일하고, IFRS에서 인정되는 인식 및 측정기준을 세무상으로도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반면,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와 같은 EU 주요국은 자국의 회계기준에 기초하여 과세소득을 산정하고 있으며, 자국의 회계기준은 자국의 감독기준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서는 자국 내에서의 감독, 회계 또는 과세문제에 있어 Solvency II의 도입 또는 IFRS 17의 향후 도입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다만, 각국이 국제적인 기준변화에 대응하는 태도에

따라 시차를 두고 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각국의 당국이 Solvency II와 IFRS 17의 도입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예측하는 것은 어려우나, Solvency II가 정착되면 자국 회계기준에서의 Solvency I의 영향이 제거될 것이며 이에 따라 세무상 기초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sup>8)</sup>. 즉, IFRS 17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자국 회계기준이나 세법에 즉시 영향을 미치지 않는으나, 자국의 회계기준과 감독기준이 국제적 기준(IFRS 17과 Solvency II)과 정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크고, 이를 세무상 수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그 시기와 영향의 정도를 예측하기 어렵다.

#### (1) 독일

독일의 경우 독일 생명보험사의 회계기준 및 세법상 처리<sup>9)</sup>를 살펴보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흐름을 보면 회계기준의 경우 상법(Commercial Code HGB)상 규정된 GAAP 및 보험업회계기준을 사용하고 있고 보험업회계처리에 있어서 prospective method 원칙이나, 불가능할 경우 전년도 기준에 interest mark-up을 하는 retroactive method를 사용하여 할인율을 규정하고 있다.

보험업과 관련한 세무상 특징으로는 Local GAAP에 의한 개별재무제표에 기초하여 과세소득을 산정하고 있으며 회계상 준비금은 공제가 가능하다.<sup>10)</sup> 또한 결손금은 제한 없이 이월공제 또는 1년간 소급공제가 가능하나 연간 상환액이 정해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IFRS 17 도입에 따른 영향에 대하여 예측해 보면 독일의 경우 통상 회계기준의 변경(회계기준위원회, GASB : German Accounting Standards Board의 자문을 받아 법무부 제정)이 세법(재무부 관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 IFRS 17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세법에 즉각적인 개정이 예상되지는 않는다. 다만, 과거 예를 볼 때 자국 GAAP이 IFRS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후 시차를 두고 세법도 이를 반영한 바가 있어, 개정 가능성은 존재하고 IMF의 보고서를 참조할 때, 독일은 Solvency II의 실행과정에서 국제기준과 정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자국 GAAP을 재차 개정할 필요성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 (2) 이탈리아

이탈리아의 경우 이탈리아 생명보험사의 회계기준 및 세법상 처리<sup>11)</sup>를 살펴보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흐름을 보면 회계기준의 측면에서 보험업회계처리를 하는데 있어 민법(Civil Code,

8) Taxing issue of IFRS 4 Phase II(2013.9.), Insurance Insight, EY.

9) International comparison of insurance taxation, 2011 edition. PWC.

10) Taxing issue of IFRS 4 Phase II(2013.9.), Insurance Insight, EY. 원문참조 “In Germany, taxable profits of insurance companies are based on financial statements under German GAAP, with tax adjustments, including those relating to the value of technical reserves/case reserves which must be valued “more realistically”, meaning that they must be less conservative than in German GAAP financial statement. They must be also discounted using an interest rate of 5.5%”

11) International comparison of insurance taxation, 2011 edition. PWC.

Legislative decree 26/5/1997, no. 173 and Legislative decree 7/9/2005, no. 209)에 규정된 GAAP 및 보험감독기관 규정(rules by Italian ISVAP)이 관련되어 있고 prospective method 원칙, retroactive method에 의한 적립액이 prospective method에 의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만 retroactive method 사용이 가능하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 보험업과 관련한 세무상 특징으로는 Local GAAP에 의한 개별재무제표(상장사의 경우 IFRS 기준에서 Local GAAP으로 재작성 요구)에 기초하여 과세소득을 산정한다. 또한 회계상 준비금은 공제가능하다. 단, 총이익 중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비율(95% 하한과 98.5% 상한 적용)을 곱하여 공제한다. 결손금은 제한 없이 이월공제하고 있으나 연간 80% 상한을 한도로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IFRS 17 도입에 따른 영향에 대하여 예측해 보면 이탈리아는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장법인에 대해 연결 뿐 아니라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도 IFRS를 의무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반면, 이탈리아 세무회계는 기업회계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아 IFRS를 과세소득 산정의 기초로 채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탈리아는 1973-74 세법개정에서 과세소득은 회계이익을 기초로 산정되며, 회계기준이 조세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세법에 의해 구체적이고 제한적인 조정(감가 및 감모상각, 충당금 및 이자비용 등)이 가능하다는 기업회계 우선의 관계를 명시하였다(Rocchi, 1996 ; Zambon, 2002).<sup>12)</sup> 또한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비용에 한하여 과세소득에서 공제 가능하도록 하는 소위 ‘결산조정’ 원칙을 규정하여, 기업회계 우선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였다.

과세당국은 IFRS 적용여부에 따른 과세의 중립성을 유지하고 Italian-GAAP에 의한 과세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법인세 계산에 있어 IFRS에 의한 개별재무제표를 채택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따라 IFRS를 적용하여 개별재무제표를 산정하는 상장기업은 ① 먼저 Italian-GAAP으로 재무제표를 재작성하고, 다시 과세소득 산정을 위한 세무조정을 하는 2단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방법은 납세협력비용을 증가시켰을 뿐 아니라, 사전에 GAAP conversion에 대한 세부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질의가 급증하는 등 실무상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요인이 된다.

이에 따라 IFRS와 세법을 조화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지방사업세(regional business tax, Imposta Regionale sulle Attività Produttive, IRAP)<sup>13)</sup>의 경우 IFRS 재무제표를 세무상 기초로 전면 수용하기로 하였다. 법인세의 경우, Italian-GAAP을 유지하되 재무제표 재작성시 IFRS에 의한 판단기준 중 일부<sup>14)</sup>를 명시적으로 수용하는 세법개정을 시행하였다(Finance Act 2008). IFRS

12) Rocchi, F. (1996), Accounting and Taxation in Italy, *European Accounting Review*, 5(Suppl.), 981-989.

13) IRAP is a flat tax levied on the company's value added net of amortisations and depreciations.

14) Tax rules recognise fiscal relevance to IFRS qualification, timing imputation and classification criteria. The qualification criterion concerns the selection and allocation, within a reference scheme, of the relevant events in order to allow their representation in the financial statements ; the classification criterion drives the allocation of the main events in the financial statements on the basis of the category

17 도입에 따른 이탈리아의 대응방안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미 납세협력비용 등을 감수하고 세무목적 재무제표를 자국의 GAAP으로 별도 채택하였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3) 프랑스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 생명보험사의 회계기준 및 세법상 처리<sup>15)</sup>를 살펴보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흐름을 보면 회계기준의 측면에서 보험업회계처리를 하는데 있어 상법(Code de commerce) 및 보험법(Code des assurances)에 의해 규정되는 Local GAAP에 따라 개별재무제표 작성하며 준비금은 Zilmer method를 강제적용 부채적정성 평가(liability adequacy test, LAT)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보험업과 관련한 세무상 특징으로는 Local GAAP에 의한 개별재무제표에 기초하여 과세소득을 산정하며 회계상 준비금은 공제가 가능하고 결손금은 제한 없이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3년간 소급공제가 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IFRS 17 도입에 따른 영향에 대하여 예측해 보면 EY의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는 회계기준을 보험법에서 분리하여 역사적 원가에 기초한 종전의 과세기초를 유지할 수 있는 별도의 과세목적 회계규정을 제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16)</sup> 따라서 IFRS 17의 도입은 French GAAP이나 세법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회계상 이연법인세의 일시적 차이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 나. EU 외 국가—호주, 캐나다

### (1) 호주

호주의 AASB는 2005년 모든 법인에 대하여 A-IFRS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모든 법인으로 확대하는 것이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고, 비영리 분야의 회계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하에 호주기업회계기준에서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으로 구분되었던 보험업회계처리를 호주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구분없이 보험계약으로 정의하였다. 호주는 생명보험법(Life Insurance Act 1995)이 계약자보호를 위한 감독법규로 운영되고 있으며, APRA(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에서 생명보험업법에 근거하여 재무보고서 작성에 관한 원칙과 선임계리사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

of the source of income (revenues, interests, etc.) ; finally, the temporal imputation criterion concerns the allocation of the events across different accounting periods.

15) International comparison of insurance taxation, 2011 edition. PWC.

16) Taxing issue of IFRS 4 Phase II(2013.9.), Insurance Insight, EY. 원문참조 “We understand that the current intention is to extract the accounting rules from the current insurance code and issue a specific tax accounting regulation that will maintain the old rules based on historical values.”

특히 생명보험 부채평가의 경우, 감독회계와 재무회계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APRA는 생명보험 계리기준 심의회에서 제정하는 Actuarial Standards를 기반으로 보험부채를 측정한다. 호주 기업회계기준 AASB 1023(IFRS)에서는 책임준비금(outstanding claims liability, OCL)에 대해 기대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근거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세무상으로는 적정하고 합리적인 평가에 따라 근거한 책임준비금에 대해서는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17)</sup> 이에 따라 회계상으로도 적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근거하여 금액을 산출함으로써 일반적으로는 세무와 동일한 금액을 인식하게 된다.

다만, 부채의 적정성 평가 및 간접비에 대해서는 세무상 인정되지 않아 동 사항에 대해서는 유보조정으로 손금부인된다. 호주 세법에 의하면 미경과보험료적립금, 기보고발생손해액, 미보고발생손해액을 세무상 부채로 인정하고 있으나, 그 외 준비금은 세무목적상 부채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오랫동안 실무에 정착된 관행과 보험 업계의 정책 특수성 때문에 보험회사의 보험 부채 준비금을 인정하는 것이다. 한편 세무목적 개별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이 IFRS 또는 Local GAAP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기업회계기준이 과세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IFRS 17과 대등한 Local GAAP 보험기준서가 발행될 예정이라, Local GAAP과 IFRS간의 차이가 작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2) 캐나다

캐나다는 IFRS도입 전에 이미 ‘캐나다식 자산부채평가법(CALM)’을 채택하고 있었다. CICA(캐나다공인회계사회)에서 모든 산업에 대한 회계기준을 제시하며, CIA(캐나다계리사회)에서는 보험회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캐나다는 재무회계(GAAP)와 감독회계(SAP)가 단일화되어 있으며, 선임계리사의 독립성이 매우 높은 나라이다. 이에 보험부채의 평가는 선임계리사의 판단에 맡겨지고 있으며, 보험회계에서 계상된 부채는 기본적으로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된다.

특히 책임준비금의 경우, CALM에 따라 미래현금흐름을 이용하여 평가하고 있다. 캐나다 상장보험회사는 2011년부터 재무제표 작성 시 IFRS를 적용하고 있으며, IFRS4는 기존의 방법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았다. 다만 전환과 관련된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IFRS4 채택의 결과로 책임준비금이 늘어난 경우, 이연시켜 5년 동안 정액으로 반영하였고 2010년 12월 31일 기준 금액을 바탕으로 전환전 책임준비금과 전환이후 책임준비금의 차이는 이익잉여금에서 조정하였다. 이처럼 호주와 캐나다는 회계기준에서 이미 공정가치기반의 보험부채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세무상 인정하여, IFRS 17이 도입되는 경우에도 중요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17) Division 321 of the income Tax Assessment Act. The OCL is defined as “the sum of the amounts that, at that time, the company determines, based on proper and reasonable estimates, to be appropriate to set aside and invest in order to meet ; ( i ) liabilities for outstanding claims under those policies ; and ( ii ) direct settlement costs associated with those outstanding claims”.

## V. IFRS17 도입 관련 세법상 제도 개선 대안 도출

### 1. 보험업 관련 국내 제도의 현황 및 대안의 도출

현행 국내의 보험업 관련 회계기준인 IFRS 4와 법인세법 규정은 보험감독기준을 준용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차이가 거의 없다. IFRS 4 국내에 도입된 이후 모든 보험사는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도 IFRS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보험업에 관한 local GAAP은 현재 존재하지 않으며, IFRS에 의한 개별재무제표를 세무상 기초 재무제표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국내의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관계는 실질적 의존형으로 법인세법상 결산조정의 원칙이 조정방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상호 긴밀한 관계가 있다. IFRS 17 및 solvency II 도입 등에 대응하여, 국내 보험감독기준은 현행 원가중심의 평가에서 시가중심의 평가방식으로 전환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체적으로 금융감독원은 (신)보험감독기준과 IFRS 17을 사실상 일원화하는 방향을 공개한 바 있고, 할인율의 적용 등의 세부적인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신)감독기준과 IFRS 17이 모두 시가 중심으로 평가기준을 변경하는 것에 대응하여, 법인세법은 ① 현행(IFRS 4)과 같이 원가법을 유지할 것인지, ② IFRS 17을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이때 앞서 검토한 다음 해외 사례를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IFRS를 도입한 EU의 주요국들(독일, 프랑스 등)은 개별재무제표의 작성에 local GAAP을 적용하도록 하여, IFRS 17이 과세소득의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탈리아의 경우에도 상장사 개별재무제표의 작성에도 IFRS를 강제적용하나 이를 local GAAP에 따른 세무목적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도록 하여 IFRS 17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다. 우리나라는 EU 주요국과 달리 보험사의 개별재무제표 작성에 IFRS가 의무적용되어 local GAAP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법인세법상 현행 IFRS 4의 과세체계를 유지하려면, 과세소득의 산정을 회계기준(IFRS 17) 또는 (신)감독기준에 더 이상 의존할 수 없고 독자적인 손익의 인식 및 준비금 등의 평가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한 종전의 과세기초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별도 과세목적 회계규정의 제정을 고려하고 있는 프랑스의 사례와 유사성이 있다. 만약 이와 달리 IFRS 17을 수용하는 방안을 채택할 경우, 영국의 세법개정사례를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 2. IFRS 17 도입에 따른 세법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한 세부 대안 제시 및 대안별 분석

앞에서 해외사례 분석 및 국내의 제도구조에 대한 기초적 분석 등을 통하여 기본방향 2개를 제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각 세부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지금부터는 가능한 모든 세부 대안을 제시하고 각 대안의 장단점 등의 분석을 통하여 합리적 적용방안을 고려해보고자 한다.

## 가. 대안 1 : 현행 법인세법 유지 및 IFRS 17 재무제표 기반으로 세무조정

우선 IFRS 17 도입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을 ① 현행(IFRS 4)과 같이 유지하는 대안(IFRS 17 재무제표 기반 세무조정)의 경우 장점으로 IFRS 4 기준의 역사적 원가주의에 의한 준비금 평가와 현금기준에 의한 수익인식방법이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한 현행 법인세법 과세체계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또한 보험부채 평가에 미래요소가 반영되지 않아 과세소득의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고 현재 수준의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세수의 예측 가능성도 유지할 수 있다. 역사적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손익과 부채가액을 확정할 수 있어, 보험사 간 일관된 과세소득 산정기준의 확보가 가능하게 된다.

단점으로는 회계 및 감독기준에 의존하던 보험 손익귀속 및 부채평가의 세부기준을 독자적으로 규정하는 대대적인 세법개정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계산규정의 입법을 위해 회계 및 장기보험계약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된다. 장기계약의 특성을 갖는 생명보험사에 단기계약에 따른 일반적인 과세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국제적 회계/감독기준에서 반영하고자 하는 경제성실질이 반영되지 않아 과세형평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대안 1을 선택할 경우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현행 IFRS 4와 IFRS 17는 보험서비스 수익인식 및 보험부채의 산정방식이 다르고 이를 손익계산서에 표시하는 방법에도 큰 차이가 있어, 세무조정항목을 1:1로 매칭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유보항목을 관리하고 세무조정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매우 복잡할 것이며, 신뢰성과 검증가능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다. 이에 세무조정의 방식이 아닌, two book system에 의한 별도 세무목적 재무제표 작성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lt;표 4&gt; IFRS 17 보험수익인식 및 보험부채 산정방식과 IFRS 4 손익 비교

| IFRS 17           |         |               |                                   | 권리의무<br>확정주의 | IFRS 4                        |
|-------------------|---------|---------------|-----------------------------------|--------------|-------------------------------|
| 구 분               |         | 속 성           | 재 량                               |              |                               |
| 보 험<br>서비스<br>손 익 | CSM이익   | 장래이익의 상각      | 관리수준, 회계정책에 따라 복잡적으로 결정           | △            | I/S 상<br>직접<br>대응<br>항목<br>없음 |
|                   | RA이익    | 평가손익          | 회사 관리수준별 상이                       | ×            |                               |
|                   | 경험조정    | 예상과 실제의 차이    | 회사 관리수준별 상이                       | ×            |                               |
| 투 자<br>손 익        | 할인효과    | 이자비용 인식시점의 도래 | 회계정책,<br>포트폴리오 수준 상이              | ×            |                               |
|                   | 할인율의 변동 | 할인율의 변동       | 회사의 할인율 정책<br>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구분 | ×            |                               |

이 경우 사실상 ‘감사’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일부금액을 세무조정하는 의의(실질적 의존)가 상실되어, 중대한 금액의 세무조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인 감사 또는 계리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 세무조정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회계상 법인세비용의 불확실성도 커져 재무제표의 신뢰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세무조정을 위해 원가법과 시가법으로 이중 계리 시스템을 유지하여야 하며, 신계약비의 측정 및 상각 등에 대하여도 이중회계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소형사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의 사례를 참조할 때, 사전에 세무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질의의 폭증 등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며, 사후적으로도 세무조사 기간 및 불복 증가 등의 위험이 있다. 이는 납세협력비용 뿐 아니라 과세당국의 행정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 나. 대안 2 : 현행 법인세법 유지 및 IFRS 4 기반의 별도 세무목적 재무제표 작성

IFRS 17과 IFRS 4는 주요항목의 인식 및 측정방법과 산출 계정이 완전히 달라, 항목별로 세무조정하는 대신 IFRS 4 기준으로 세무목적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하는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① 세법에서 별도로 정한 계산규정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법과 ② 회계기준원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별도의 세무목적 local GAAP의 제정하여 작성하고 세법의 일반규정에 따라 조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세무목적 재무제표의 작성으로 세무조정에 관한 여러 문제는 해소될 수 있으나, 별도 재무제표 작성비용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감사 비용 등이 발생하여 납세협력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다른 산업과 달리 보험사만 예외로 별도 기준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특수성이 발생한다.

#### 다. 대안 3 : IFRS 17과 일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인세법을 개정

이 대안과 같이 세법이 개정될 경우 생명보험업의 장기계약 특성을 반영한 실질과세체계를 마련하여 과세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하여 보험과세제도의 합리화 및 선진화가 가능하다. 보험업 과세소득의 계산규정을 회계기준에 의존할 수 있어 법인세법의 단순성을 유지할 수 있고 전환시점의 조정이 필요하나, 향후에는 복잡한 세무조정이나 불확실성이 발생하지 않아 납세협력비용이 크게 절감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과세소득의 변동성이 증가하여 세수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된다. 보험사의 입장에서 회계상 법인세비용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이 낮아져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주가와 자본적정성 지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전환시점에 IFRS 17의 측정기준에 따라 보험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보험수익도 이연되어, 단기적으로 세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경우 세무상 적정수준의 보험부채를 인정하는

보완책(일정한 할인율을 제시하거나 상하한을 제시 또는 역사적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 과세 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리사를 통해 보험부채의 적정성을 재확인할 수 있는 보완장치 등을 마련, 보험부채의 손금산입 한도 또는 비율을 설정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회계상 재량적 회계처리의 증가와 미래예측요소 반영으로 인하여 세무상 검증가능성이 약화되고 조세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에는 법인세법에서 회계상 재량의 범주를 축소하고 미래예측요소의 추정방법도 객관화하는 보완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또한, 기존 세무공무원의 교육훈련강화와 보험전문가의 영입을 통해 조사전문가를 양성하는 등의 세무행정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문제는 보험부채의 시가평가를 인정할 경우 현행 법인세법상 자산(특히 투자자산)의 원가평가원칙과 부조화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과세소득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 라. 대안 4 : 현행 법인세법 유지한 후 IFRS 17과 일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

이 대안은 IFRS 17을 도입한 후 일정 기간 현행 과세기준을 유지하고, 새로운 회계시스템이 안정화된 후에 과세소득 및 세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여 대안을 확정하는 방법으로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러나 경과기간 동안 이중시스템을 유지하여야 하는 납세협력부담이 발생하고, 과세기준의 불확실성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

## VI. 결 론

보험업계는 2017년 5월에 최종적으로 공표된 IFRS 17의 도입을 앞두고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의 표시 형식의 변경만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의 신용 및 성과공시, 감독, 조세제도, 영업방식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한 영향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IFRS 17이 법인세법 분야에 미치는 영향 및 이슈를 파악하여 향후 정부와 업계가 합리적인 세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보험회계 및 감독제도변경에 따른 세무상 이슈를 파악하고, 영국을 포함한 주요 EU 보험선진국의 해외사례를 검토하였으며 법인세법 개정 대안과 장단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파악된 주요 세무상 주요 이슈는 다음과 같다.

우선 세법이 현행기준을 유지할 경우 보험부채의 평가방법의 변경(원가법에서 시가법으로) 및 수익비용 인식 기준의 차이로 인해 세무조정의 복잡성이 증대되고 검증가능성의 문제가 대두되었고 세법 개정시 이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또한 IFRS 17은 보험료 수익을 전 보험기간에 걸쳐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귀속시기에 대한 업종별 특수성

을 인정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sup>18)</sup> 더불어 세법이 IFRS 17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경우, IFRS 17 최초적용 시 준비금 변동액의 손금 및 익금 인정 여부, 이후 할인율 변동에 의한 보험부채 관련 손익의 손금 및 익금 인정 여부, 손익의 귀속시기 차이에 의한 이중과세 또는 이중공제 배제 여부, 재량적 회계처리 방식의 수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세법의 정책방향의 원칙을 정하기 위하여 각국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IFRS 17 도입과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EU 국가들의 보험업 세제 동향과 개정 사례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선 EU 내 통용되는 국제 기준(IFRS 및 Solvency II)이 시행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다수의 EU국가들은 자국 회계기준/감독기준/세법을 독자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자국 기준의 국가 간에 차이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자국 회계기준/감독기준을 채택한 국가에서는 IFRS 17 도입에 따른 세무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16년 도입된 Solvency II가 정착되고 나면 자국 회계기준에서의 Solvency I의 영향이 제거되고 IFRS 17과 정합성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세무상 과세소득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IFRS 17 도입에 대응하여 4가지의 세법 제도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한 대안을 도출하였다. 우선 현행 법인세법 유지 및 IFRS 17 재무제표 기반으로 세무조정하는 방안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현행 법인세법 유지 및 IFRS 4 기반의 별도 세무목적 재무제표 작성하는 방안 세 번째는 IFRS 17과 일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인세법을 개정하는 방안 마지막으로 현행 법인세법 유지한 후 IFRS 17과 일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방안이다. 각 대안 장점과 단점을 각각 가지고 있어 도입 시기와 가까운 시점에 예측되는 향후 세계금융산업의 변화 그리고 세수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적합한 대안이 결정되어야 한다.

특히 IFRS 17 도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변화된 회계제도에 적용이 가능한 합리적 과세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업계 전반에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관련 사항을 정책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대안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며 이때 재정수요 확보와 조세의 기본원칙에 따른 공평한 과세 실현 및 장기보험계약의 특성을 반영한 보험과세 제도 합리화, 보험업 과세제도가 보험업계와 경제전반 및 소비자(보험계약자)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및 사회적 비용, 과세제도 변화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및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소형사에 대한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경과조치 없이 도입되어 시장의 충격이 클 수 있는 IFRS 17의 시행이 점차 임박해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정책당국간 정책적 공조 및 협조 시급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외국 보험사 및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되기 위해서 세법 개정 시 업계 전반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18) IFRS 기준의 개별재무제표를 세무상 기초로 유지할 경우, IFRS 17 시행에 따라 보험업의 교육세 과세 표준에 대한 적절한 대인도출이 필요함

일례로 IFRS 4가 도입될 때에도 업계를 중심으로 비상위험준비금과 LAT에 관한 연구결과와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에 제시한 바 있다. 이에 IFRS 17의 경우 IFRS 4의 도입시 보다 보험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점을 고려할 때, 과세당국이 중심이 되어 유관기관과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조할 수 있는 공식적인 협의체(TF)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정책당국과 업계는 이러한 협의체(TF)를 시급히 조직하고 운용하여 국내 보험산업의 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조세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고 성공적인 로드맵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수성. 2018. “K-IFRS 도입에 따른 손해보험회사의 비상위험준비금 영향 및 과세 대응방안”.  
세무학연구 27(1) : 199-232.
- 김은경 · 김문철. 2016. “IFRS 4 보험계약 2단계 도입에 따른 보험업 관련 세법의 개정 방향”.  
세무와회계저널 17(4) : 9-31.
- 심태섭 · 장연호. 2018. “IFRS 17 (보험계약) 적용에 따른 세법 개정 방향”. 세무학연구 제35(3)  
: 119-155.
- 오창수. 2016. “IFRS 17 도입에 따른 보험부채평가와 손익분석”. 2016년 한국회계학회 동계학  
술대회 발표자료.
- 조석희. 2017. “한국회계학회 한국계리학회 공동세미나 자료”
- 조형태 · 장연호 · 홍군화 · 심태섭. 2011. “IFRS도입에 따른 보험준비금 관련 세제 개편과 업계  
대응 노력”. 회계저널 20(2) : 277-312.
-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2017. Prudential and Reporting Standards for  
General insurance.
- Australia. 2017. Income Tax Assessment Act.
- EY. 2013. Taxing issue of IFRS 4 Phase II Insurance Insight.
- EU. 2017. EU Regulation 606.
- PWC. 2011. International comparison of insurance taxation.
- Rocchi, F. 1996. Accounting and Taxation in Italy, *European Accounting Review* 5 : 981-989.
- Zambon, S. 2002. *Locating accounting in its national context : The case of Italy*, Milano,  
Franco Angeli.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Tax Law in Relation to the Introduction of IFRS 17 Focusing on Overseas Cases\*

Jae Won Yoon\*\* · Sung Jong Park\*\*\* · Hye Jeong Nam\*\*\*\*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policy direction for establishing and settling plans from a tax perspective to successfully settle the recently finalized version of IFRS 17 through consideration of policy directions overseas, especially in Europe. In this paper, the cases of each country were reviewed to establish the principle of the direction of revision of the tax law to solve these issues and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Although considerable time has passed since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many EU countries are expected to maintain their own standards independently, which will not have a significant tax impact on the introduction of IFRS 17, but the future establishment of the Solvency II is expected to reduce the applicability of the national standards, which is expected to increase the tax impact and take active countermeasures.

In this paper, four policy directions were presented in consideration of the current response direction in Europe. First of all, maintaining the current corporate tax law and making tax adjustments based on the financial statements of IFRS 17 are the first, and the second is to maintain the current corporate tax law and prepare separate tax-purpose financial statements based on IFRS 4, and the third is to revise the corporate tax law to enhance consistency with the current corporate tax law and, finally, to increase consistency with IFRS 17.

In the case of IFRS 17, it was judged that it would be more effective to use a formal consultative body (TF) centered on taxation authorities to gather and cooperate with relevant agencies and industries, given that the effect on the insurance industry as a whole is more important than the introduction of IFRS 4. Thus, in this paper, the policy authorities and the

\* This work was supported by 2018 Hongik University Research Fund.

\*\* Professo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Hongik University, jwyoona@hongik.ac.kr,  
First Author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lobal Business Administration, Anyang University,  
sjpark@anyang.ac.kr, Corresponding Author

\*\*\*\* Professor,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Dongguk-Seoul University, namhj@dongguk.edu,  
Co-author

industry urgently proposed to organize and operate such a consultative body (TF) to prepare a reasonable tax system that conforms to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the domestic insurance industry as soon as possible and to establish a successful road map.

〈Key words〉 IFRS 17, Insurance Accounting, Insurance Taxes, Policy Directions for Insurance Taxes